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8,206,459	17,346,194
일반회계	503,666,147	15,109,984
특별회계	74,540,312	2,236,209
공기업특별회계	65,418,212	1,962,54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801,960	744,05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643,315	649,29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972,937	569,188
기타특별회계	9,122,100	273,663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72,685	8,181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6,500	12,49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18,792	75,564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57,927	88,738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484,000	14,520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2,444,650	73,340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27,546	826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사업 이월 조서"와 같다.

제 4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942,579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0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